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

미래창조과학부

보 도 자 료

<http://www.msip.go.kr>

2014. 11. 28(금) 조간(온라인 11.27(목) 12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연구제도과 한형주 과장(02-2110-2730), 이종우 사무관(02-2110-2732)

“연구비 부정사용하면 연구비 환수 외에 과징금도 추가부과”

- 미래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-

- 미래 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미래부)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, 이하 공동관리규정) 개정안이 지난 1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8일 공포·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5월28일에 개정된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라 성실수행 인정 기준,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등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,
 -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.
- 먼저,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였다.
 -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하였던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 -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엄중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- 또한,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,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‘성실수행 인정’의 기준을 마련하였다.
 - 즉,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,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,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면제된다.

- 그리고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,
 -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,
 - 연구개발 종료시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다.

-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“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히며,
 - “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.”고 언급하였다.

※ < 참고 >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 개정 주요내용

1 추진 배경

- ‘과학기술기본법’ 개정이 완료(‘14.5월)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동관리규정에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 반영 필요

< 과기법 개정사항(공동관리규정 관련) >

- (성실수행 인정)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시 참여제한,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‘성실수행’ 인정 근거 명시
- (제재부가금 부과)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액을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-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,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

2 주요 개정내용

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후속조치 】

- (성실수행 인정)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
 - 연구과제 실패(또는 중단)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,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
- (제재부가금 부과)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제시
 - (부과 기준) 연구비 용도의 사용 금액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비율을 차등화하여 기준 제시

※ 1억원 미만(20%), 20억원 미만(40%), 50억원 미만(60%), 100억원 미만(80%), 100억원 이상(100%)

【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】

- (협약해약) 연구수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과제수행도중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
- (이행실적 보고) 연구개발 종료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